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Sor.1/2559호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에 따른 투자촉진 대상 활동 목록에 따른 추가 개정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 두 번째 단락에 의거하여 투자위원회는 투자촉진 정책 및 기준에 관한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2014.12.3)를 추가적으로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에 첨부된 Section 4, Section 5, Section 7에 대해 활동, 조건 및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Section 4: 금속 제품, 기계류 및 운송장비

활동	조건	인센티브
4.5.4 로봇 또는 자동화 장비 및/또는 자동화 부품의 조립		A3
4.8.5.4 연료 파이프/튜브		A4
4.8.6.11트랜스미션 케이스		A3
4.8.7.8 밸브		A4
4.8.7.10 기어		A4
4.8.8.3 에어백 부품 예) 이니시에이터, 냉각 필터		A4
4.8.8.4 안전벨트 부품 예) 인터록(Interlock), 리트랙터(Retractor)		A4
4.8.9.7 브레이크 세트		A4
4.8.13.2 배기 촉매		A4
4.11.4 기타 탑재 장치 및 장비의 수리(일회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항공용품 제외)		A4

활동	조건	인센티브
4.11.5 항공 장비 및 장치의 제조 예) 로켓과 관련된 장비 또는 장치 / 우주선/ 우주선 부품/ 추진 장치와 보조 장치 등	지구정보우주기술개발청(GISTDA, Geo-Informatics and the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공공기관)과 같은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1
4.11.6 항공운영시스템 예) 수색, 탐색, 네비게이션, 안내, 항공, 항로 시스템 및 계기판 등	지구정보우주기술개발청(GISTDA, Geo-Informatics and the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공공기관)과 같은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1

Section 5: 전자 및 전기 제품 산업

활동	조건	인센티브
5.7.3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분석 및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정보 보안 및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를 포함한 첨단 기술 장치용 소프트웨어 개발 - 제조업 지원용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1. 프로젝트는 IT 직원의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를 지출해야 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SIPA)이 규정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3.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1,000만 바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완전 조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SIPA로부터 품질표준인증을 획득하거나 CCMI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품질표준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1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취소된다. 4. 투자촉진을 받은 소프트웨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한 수입은 해당 투자촉진 사업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A1
5.9 디지털 서비스 - 소프트웨어 플랫폼 - 매니지드 서비스 - 디지털 건축 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서비스 예) 핀테크, 디지털 기술, 의학기술, 농업 테크 등	1. 디지털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며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은 1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위원회에서 승인한 디지털 서비스 처리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1,000만 바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완전 조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SIPA로부터	A3

활동	조건	인센티브
	<p>품질표준인증을 획득하거나 CCMI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품질표준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 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1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취소된다.</p> <p>4. 투자촉진을 받은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수입은 해당 투자촉진 사업의 수입으로 간주한다.</p> <p>5. 프로젝트는 투자촉진 신청 전에 정보통신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Section 7: 서비스 및 공공 유틸리티

활동	조건	인센티브
7.9.1.7 항공기 또는 항공산업구역 또는 산업 단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면적은 100라이 이상 되어야 한다. (1라이는 약 1,614m²임) 2. 프로젝트는 전체 또는 일부 영역을 보세 창고 또는 자유구역(Free Zone)으로 할당해야 한다. 3. 프로젝트는 항공기 및 부품 유지 및 수리센터를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프로젝트는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도로, 빗물 배수, 홍수방지 시스템, 수도 상수처리 시스템, 폐수 처리 시스템, 통신 및 전력 시스템, 화재방지 시스템, 산업폐기물 처리 시스템, 적합한 보안 시스템 등의 충분한 공공 유틸리티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유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3
7.9.2.4 혁신보육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통신 시스템으로 광통신망 (FTTX)을 갖추어야 한다. 2. 지속적인 전력공급 백업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프로젝트는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멘토)가 있어야 한다. 	A1

활동	조건	인센티브
	4. 프로젝트는 기술 생태계 또는 기술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5. 전체 서비스 지역은 300m ² 이상이어야 한다. 6. 프로젝트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기술이나 기술개발과 관련된 교육 훈련이어야 한다.	

2.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 (2014.12.3)에 첨부되어 있는 활동 카테고리 1.2, 3.1.3, 3.9, 3.11.1, 4.8.7.2, 4.8.8.1, 4.8.8.2, 4.8.9.6, 4.11, 4.11.1, 4.11.2, 4.11.3, 5.1.1, 5.7.2, 7.22.1, 7.22.2를 종료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과 조건으로 대체한다.

Section 1: 농업 및 농산물

활동	조건	인센티브
1.2 식물 또는 동물 육종 (바이오기술에 속하지 않는 활동만 해당)	1. 프로젝트는 R&D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정책에 따라 민감한 식물을 육종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 자본의 51%에 해당하는 지분을 태국인이 보유해야 한다. 3. 촉진 프로젝트에서 식물 육종으로 인한 식물 번식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투자촉진 대상 프로젝트의 수입으로 간주한다. 다만, 카사바(cassava)의 번식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촉진을 받은 과학기술파크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후 5년간 법인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5. 프로젝트는 R&D 인력의 연봉으로 최소 1,500,000 바트를 지출해야 한다.	A3

Section 3: 경공업

활동	조건	인센티브
3.1.3 표백, 염색 및 마감처리, 또는 날염 및 마감처리, 또는 날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단지 또는 투자촉진을 받은 산업구역 또는 산업부 고시 제30조에 따른 폐수처리, 환경보호 및 관리시스템을 갖춘 산업지에 위치하거나 확장하는 건이어야 한다. 2. 프로젝트가 1번에 명시한 지역에 위치하는 건이 아닌 경우, 기존 프로젝트의 확장에 대해서만 허가한다. 이 경우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섬유산업에서 디지털 프린팅 사업은 모든 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 4. 환경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생산효율성 향상 촉진 방안으로 투자촉진을 신청하는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촉진된 산업 구역 또는 산업부 고시 제30조에 따른 산업지에 위치했는지와 상관없이 기존 프로젝트 지역을 허가한다. 5. 환경 친화적 기술을 모든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A3
3.9 창조적 제품 설계 및 개발 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설계를 위한 정보 시스템 1.2 컨셉 설계 및 창작 시스템 2. 프로젝트는 다음 중 하나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엔지니어링 설계 시스템 2.2 프로토타입 설계 및 성능 테스트 시스템 2.3 프로토타입 표준 시험 및 사용자 수용성 테스트 시스템 3. 프로젝트의 전체 피고용인 중 70%는 태국인이어야 한다. 4. 창조적 제품 설계 및 개발에 종사하는 직원의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가 지출되어야 한다. 5. 촉진을 받은 과학기술파크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 만료 후 5년간 법인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A1

활동	조건	인센티브
3.11.1 고위험성 또는 첨단기술 의료기기 (엑스레이, MRI, CT 스캔 기계, 임플란트 등)의 제조 또는 공공부문 연구 또는 공공-민간 공동 연구를 통해 상용화된 의료기기의 제조	1. R&D 및 혁신을 포함한 프로젝트인 경우 2. R&D 및 혁신을 포함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A1 A2

Section 4: 금속 제품, 기계류 및 운송장비

활동	조건	인센티브
4.8.7.2 터보 차저 부품 예) 터빈 블레이드, 터빈 하우징, 베어링 하우징		A4
4.8.8.1 에어백/안전벨트		A4
4.8.8.2 에어백 인플레이터, 가스 발생장치(Gas Generator), 가스 발생기(Gas Generant)		A3
4.8.9.6 브레이크 파이프/튜브		A4
4.11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 4.11.1 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의 제조 예) 기체, 주요 부품(엔진 및 부품, 프로펠러), 기기(항공기록장치, 레이더), 장비 및 기타 부품		A1
4.11.2 탑재 장치 및 장비의 제조 (일회용 및 재사용 가능한 항공 용품 제외) 예) 의자, 구명조끼, 트롤리, 기내 주방(galley) 등		A3
4.11.3 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의 수리		A2

Section 5: 전자 및 전기 제품 산업

활동	조건	인센티브
5.1.1첨단 전기 제품의 제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제품은 사물인터넷과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또는 2.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허용하는 회로 또는 운영제어시스템, 처리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한다. 	A3
5.7.2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및/또는 디지털 콘텐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트는 IT 직원의 연봉으로 최소 150만 바트를 지출해야 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청(SIPA)이 규정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을 갖추어야 한다. 3.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1,000만 바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완전 조업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SIPA로부터 품질표준인증을 획득하거나 CC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품질표준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1년간의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취소된다. 4. 투자촉진을 받은 소프트웨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한 수입은 해당 투자촉진 사업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A3 (법인소득세 면제 금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Section 7: 서비스 및 공공 유틸리티

활동	조건	인센티브
7.22.1 페리 서비스 또는 관광 보트 또는 관광 보트 대여	유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3
7.22.2 관광 보트 포트(port) 서비스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 선대(building berth), 내륙 보트 데크, 유지보수를 위한 보트 보관소 등	A3

본 고시는 2016년 2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일 2016년 4월 11일

(General Prayut Chan-o-cha)

투자위원회 의장